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9. 1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8.21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.8.25.
- 다. 상정일자 :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5.9.1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행정과장 김 은 영

가. 제안이유

저소득 구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,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생활보장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 -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사항 명시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
- 「기초연금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·결정에 관한 사항

2) 생활보상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
- 위원장 : 구청장,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- 공무원 : 복지교육국장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
- 민간위원 :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, 공익을 대표 하는 사람
- 간사 : 생활보장과장, 서기 : 기초보장팀장
-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

3)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명시

4)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- 위원의 해촉 및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 명시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,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-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과 「기초연금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·결정에 관한 사항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